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273호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8-6호)」에 따라 유전자변형 카놀라 MS11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유전자변형 카놀라 MS11	한국바스프(주)	BASF Agricultural Solutions Seed US LLC	제2019-4호	2019. 5. 29.

2. 승인 조건

-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297호

「친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2020년 월력요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020년 월력요항

1. 주의사항

- 가. 날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양력(그레고리력) 기준
- 나. 일요일을 비롯한 관공서의 공휴일은 적색으로 표기
- 다. 자료 작성일 : 2019년 3월 19일
- 라. 관련 법령
 - 1) 국경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12915호, 2014.12.30.]
 -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394호, 2017.10.17.]
 - 3)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562호, 2019.2.26.]

2. 주요내용

일요일

월	일 요 일			
1	5	12	19	26
2	2	9	16	23
3	1	8	15	22 29
4	5	12	19	26
5	3	10	17	24 31
6	7	14	21	28

월	일 요 일			
7	5	12	19	26
8	2	9	16	23 30
9	6	13	20	27
10	4	11	18	25
11	1	8	15	22 29
12	6	13	20	27